

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1가단1336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하

피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후

변론 종결2023. 5. 11.

판결 선고2023. 6. 15.

주 문

1.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0.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6.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409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과 피고의 혼인관계 등

1) B과 피고는 2006. 5. 2. 혼인하여 슬하에 C(D 생)과 E(F 생)을 자녀로 두었고, 2020. 10. 19. 협의이혼하였다.

2) 혼인기간 중 B은 'G'이란 상호의 섬유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관계

1) B은 2012. 6. 28. 자신과 피고의 공동명의로 포천시 H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9. 10. 23. 소외 I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을 9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20. 1. 10. 그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설정된 공장저당권의 피담보채무(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합계 635,000,000원을 변제하여 위 공장저당권을 말소하고, 같은 날 I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과 동시에, I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매월 30일 후불), 기간 2020. 1. 30.부터 2022. 1. 2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2) B은 이 사건 임대차 차임에 관하여 2020년 2, 3, 4월 지급분 차임을 지급하고, 2020년 5월 지급분 차임부터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20. 9. 22. 소외 B과 사이에, B이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예정인 기업일반자금 64,000,000원의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51,200,000원(보증비율 80%), 보증기간 2020. 9. 22.부터 2021. 3. 22.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2020. 9. 24. J으로부터 64,000,000원을 변제기 2021.

3. 2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3) B은 위 변제기인 2021. 3. 21.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J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21. 8. 3. J에 합계 52,245,882원(원금 51,200,000원, 이자 1,045,8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B과 피고의 이혼 및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1) B과 피고는 2020. 7. 6. 의정부지방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여 2020. 10. 16. 위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2020. 10. 19. 협의이혼을 신고하였다.

2) 당시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B은 2020.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0.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재산분할합의를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

마. B의 폐업

B은 2022. 2. 24. 'G'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0, 11호증, 을 제2, 3, 17 내지 20, 21, 2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재산분할 이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는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미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되어 있었다. 나아가 이 사건 재산분할일인 2020. 10. 20.로부터 불과 5개월 정도 후인 2021. 3. 21.에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B이 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제로 2021. 8. 3. 원고의 대위변제로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무자력

1)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및 L기관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1]와 같이 인정된다.

[표1] B의 재산상태

적극재산	이 사건 제1 부동산	265,000,000	을 제5호증
K에 대한 채무	171,399,460	K 회신(2021. 12. 30.)	
J에 대한 채무	64,000,000	L기관 회신(2022. 4. 25.)	
소극재산	M조합에 대한 채무	25,000,000	
N에 대한 채무	11,225,000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2020년 10월 기준 연체차임

19,250,000원(5개월분)을 공제한 나머지 30,75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과 이 사건 공장건물 내 설치된 가액 24,510,000원 상당의 환편기(섬유제조기계) 등 기계도 B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당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관계에서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장차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등으로 그 권리가 실제로 성립하는 때에 선순위권리의 존재 또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불이행 등으로 임차인이 이를

현실적으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애초의 보증금액 상당의 가치대로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평가하는 것이 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등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1183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2020. 1. 30. 개시된 이후 B이 3개월분 차임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2020. 10. 20. 당시 이미 5개월분 차임이 연체된 상태였던 점, 임대인인 I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B이 몇 개월째 계속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은 전부 소멸하였고, 오히려 자신이 B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B의 계속된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B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현실적으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B이 이 사건 공장건물에 설치된 환편기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이 I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공장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의 소유권도 함께 이전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재산분할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을 제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B이 피고 주장의 환편기 등 기계를 소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B은 2020. 1. 10. 이 사건 공장건물을 I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기계·기구에 관하여 설정된 공장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위 공장저당권을 말소시켰다. ②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양도 이후 환편기 등 기계는 계속 이 사건 공장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장건물 자체의 소유자가 I로 변경된 이상 위 환편기 등 기계의 소유관계가 대외적으로 충분히 공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B은 I과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미 5개월분 차임이 연체되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B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의심스럽다. ④ B은 2022. 2. 24. 'G'을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건물에 설치된 기계·기구는 언제 처분되었고, 그 처분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 주장의 환편기 등 기계 역시 B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B의 채권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고, B이 이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경우,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2)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 가)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되는바(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참조). 한편,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협의이혼 신고일인 2020. 10. 19. 기준 분할대상 재산은 아래 [표2] 기재와 같고, 순 재산 합계는 23,875,540원이다.

[표2] 분할대상 재산

B	적극재산	이 사건 제1 부동산	265,000,000
소극재산	K에 대한 채무	171,399,460	
J에 대한 채무	64,000,000		
M조합에 대한 채무	25,000,000		
N에 대한 채무	11,225,000		
소계	271,624,460		
피고	적극재산	이 사건 제2 부동산	294,400,000
소극재산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200,000,000	
O에 대한 채무	9,000,000		
P에 대한 채무	24,900,000		
J에 대한 채무	30,000,000		
소계	263,900,000		
순 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	-6,624,460		
순 재산(적극재산-소극재산)	30,500,000		
순 재산 합계	23,875,540		

(1)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는 혼인기간 중인 2020. 5. 13.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① B과 피고의 혼인기간이 14년 5개월에 이르는 점, ② 혼인기간 동안 B이 소득활동을 한 점, ③ 이 사건 제2 부동산이 B과 피고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B이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제2 부동산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2) B의 K에 대한 채무와 피고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는 공동재산인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므로 청산대상이 된다.

(3) B과 피고의 각 나머지 채무의 경우, B이 혼인기간 중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G'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재산분할비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과 피고의 혼인기간이 14년 5개월에 이르고,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재산분할과 별도로 B이 자녀 1인당 월 2,0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진 점, ③ 혼인기간 중 B은 소득활동을 하고,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점, ④ 분할대상 재산 중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는 등으로 특유재산이라고 볼 만한 것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B과 피고는 혼인기간 중 이룩한 공동재산 중 각 1/2 상당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재산분할의 상당성 여부 가)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위 [표2]에서 B은 2020. 10. 19. 협의이혼 신고일 당시 순 재산 -6,624,46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순 재산 합계의 1/2에 상당하는 11,937,770원(= 23,875,540원 × 1/2)과의 차액인 18,562,230원(= 11,937,770원 + 6,624,460원)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었는데, B은 오히려 피고에게 26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으로서 그 전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B이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이 없다.

라.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B은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26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는바, B은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과 몇 년째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며,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의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위와 같은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지영

별지